

문서번호	교통지도과-21908
결재일자	2015.9.3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주차단속담당	교통지도과장	안전건설교통국장		
주행진	이기영	임장식	09/03 이준기		
협 조					

- 2015년 추석 연휴 -

불법 주·정차 특별단속 추진 계획

2015. 9.

안전건설교통국
교통지도과

- 2015년 추석 연휴 -

불법 주·정차 특별단속 추진 계획

추석 연휴기간 중 불법 주·정차 차량에 대해 중점 단속지역, 탄력적 단속지역, 기타 민원 지역으로 구분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귀성·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함

I 추진 개요

추진근거 및 운영일정

- 추진근거 : 2015년 추석 연휴 불법 주·정차 특별단속 계획
(서울시 교통지도과-20917호, '15.8.28)
- 추진기간 : '15.9.21.(월) ~ 9.30.(수), 10일간
- 추석연휴 「상황실」 운영
 - ▶ 상황실 근무 운영 (당직실, 주차단속팀 및 단속공무원)
 - 당직실 : 24시간 운영
 - 불법 주·정차 단속반(오전반: 07:00~15:00, 오후반: 14:00~22:00 야간반: 22:00~익일 05:00)

II 추진 방향

- 추석연휴 명절기간 임을 고려하여 시민안전과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계도중심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 등 단속 추진
- 불법주·정차로 차량소통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단속을 추진하고, 전통시장 등은 계도 중심으로하되 2열주차, 보도 위·정류소 등의 불법 주·정차는 단속
- 연휴 특성상 차량이 밀집하는 특정시간(오후,저녁)대에 생활도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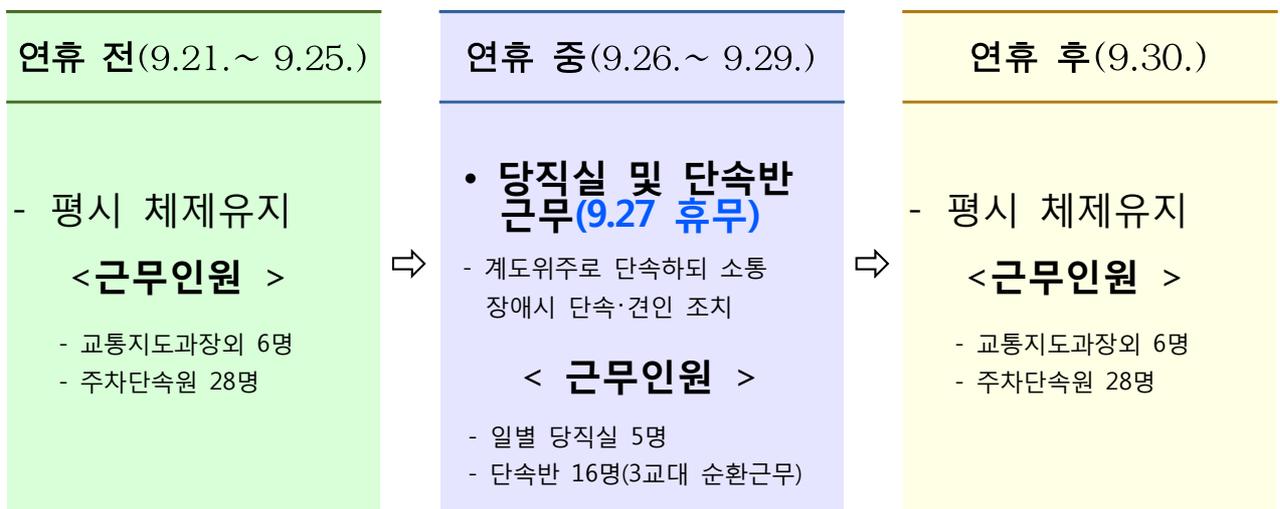
(이면도로), 주택가 골목길 등에 불법 주·정차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화재 사고 등에 대비한 소방도로 기능이 유지되도록 순찰 실시

Ⅲ 추진 계획

□ 지역별 단속 방법

- 중점관리(단속)지역: 불법 주·정차 단속 민원 다발지역, 상습(고질)적인 불법 주·정차 발생지역
 - ▶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절대금지구역(어린이보호구역, 보도 위 등)
 - ▶ 2열주차, 대각선 주차 등으로 2개차로를 점유하여 차량소통에 방해하는 경우
 - ※ 시민안전과 차량소통에 불편을 주지 않는 경우 계도 중심으로 단속하고, 그 외에는 과태료 부과 및 필요시 견인조치 등 병행
- 탄력적 관리(단속)지역: 전통시장·소규모 상가, 주택가 골목길, 생활도로(이면도로)등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
 - ▶ 차량소통과 보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속유예 또는 계도
 - ▶ 주택가 골목길, 이면도로가 소방통로 기능이 확보 되도록 계도 및 단속 추진
- 기타 민원지역: 120 다산콜 및 개별 전화 민원지역
 - ▶ 민원 신고 접수시 신속한 현장출동, 이동조치 및 단속(계도)

□ 근무 방법 및 근무 인원



불법 주·정차 중점 단속 방법

-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순찰 강화
- 120 민원 및 전화 민원 사항 우선 처리
- 생활도로(이면도로), 주택가 골목길 등에 불법 주·정차 차량은 계도 위주로 하되 2열주차, 차량 출입구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는 단속
- 주택가 골목길, 이면도로는 소방통로 기능이 확보 되도록 계도 및 단속 추진